

의안번호	제 678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4월 13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78
----------	-----

제출연월일 : 2021년 4월 1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공직자윤리법(2020. 12. 22. 개정, 2021. 6. 23. 시행)에 따라 위원회 운영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변경(안 제2조제1항)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명 늘리면서 민간 위촉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
  -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
  - 소속 공무원 위원을 기획관리실장, 감사관으로 지정
- 오기사항 정비(안 제5조제3항)
  - 제1조제1항제1호를 제2조제1항제1호로 수정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6. 비용추계서 : 붙임

##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를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명”을 “9명”으로,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속 공무원 2명으로 한다.”를 “기획관리실장, 감사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1조제1항제1호”를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b>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b></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등에 대한 심사·결정을 위한 <u>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u>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11명</u>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u>7명</u>의 위원은 <u>법관</u>, 교육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p> <p>2. 4명의 위원은 충청북도의회</p>	<p style="text-align: center;"><b>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b></p> <p>제1조(목적) ----- ----- ----- ----- <u>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u>----- ----- -----.</p> <p>제2조(구성) ① ----- ----- ----- <u>13명</u>----- ----- -----.</p> <p>1. <u>9명</u>----- <u>판사·검사·변호사</u>, ----- ----- ----- -----</p> <p>2. -----</p>

현행	개정안
<p>의원 2명과 <u>소속공무원 2명</u>으로 한다.</p> <p>②~③ (생략)</p> <p>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p> <p>①~② (생략)</p> <p>③ <u>제1조제1항제1호</u>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p>	<p>----- <u>기획관리실장, 감사관</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2조제1항제1호</u>-----</p> <p>-----</p> <p>-----</p> <p>-----.</p>

## 관련법령 발취

### □ 공직자윤리법('20. 12. 22. 개정, '21. 6. 23. 시행)

####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 위원 2명 증원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 비용 발생 요인

- 민간위원 2명 증원(7명→9명)에 따른 위원회 수당 지급 수요 발생

## 3. 관련조문

- 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 제9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산출근거 : 200천원(1명) × 2명 × 5회/년 = 2,000천원
  - 증원 민간위원 2명이 회의참여 시 1명당 200천원(출석 100천원, 안전심사 100천원) 소요

### 나. 추계결과

- 개정안 시행 시 ' 21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0,000천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
-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일반회계 100%
  - ※ 정책기획관실 위원회 운영수당 활용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출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출석수당 등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 6. 작성자 : 감사관 임양기